# 2025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2월 26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I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금융 빅데이터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유도

### □ 주요내용

- 모집대상: 금융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 단계 (예비)창업자 지원 가능
  - \* 활용분야(예시)
    - : 금융 데이터를 적용한 핀테크,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정책 및 상품 분석 서비스, 모바일 금융거래, 챗봇, 신용 리스크 분석,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데이터 활용분야 전반 (타 분야와의 융복합 아이템 가능)
  - \* 타 업종 기업은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신규아이템(융복합) 진출 신청 가능
- 선정규모: 총 5개사 내외(사업화지원(신규) 4개사, 사후관리(기존) 1개사)
  - \*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워내용

- \* 추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결정
- 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금 최대 30백만원(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사후관리지원: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 시제품 제작, 기능 개선, 컴퓨팅 자원(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인건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사업기간 : 협약 후 ~ 2025년 12월까지

## 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신청분야와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
  - 신청분야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 ① 금융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이후 7년 이내)창업기업
      - \* 금융 데이터 분야 기반으로 개발되어 부가가치 창출 또는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한 아이템
    - ② 타 업종 기업은 금융 데이터 신규아이템(융복합) 진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장 소재지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 ①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기업
      - \* 본사(타지), 지사(도내)인 경우,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의 도내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 기업(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 □ 신청제외 기업

-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기업)

-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Ⅲ 지원내용

- □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간: 협약일 ~ 2025년 12월까지)
  - 사업화지원: 최대 30백만원(기업별 차등지원)
    - 사업화지원: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사후관리지원: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시제품 제작, 기능 개선, 컴퓨팅 자원(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인건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지원항목

구분	항목	구분	항목
인건비	인건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외주용역비	기술정보 활동비	기술이전비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전시회참가비
	과그 서저비	지급수수료	멘토링비
마케팅비	광고선전비		회계감사비

※ 지원항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지원금의 30% 자부담(현금 10%, 현물 20%)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	창업기업 자부담		
중 시합비	시원급	현금	현물	
2 000 E OI	3,000만원	300만원	600만원	
3,900만원	100%	10%	20%	

<sup>※</sup> 추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위의 '예시'와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비 지원항목 정의

비 목	비목정의
인건비	O 협약일 이후 채용한 신규 직원이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재료비	○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자재임차비	O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ex) 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광고선전비	<ul> <li>○ 기업 홈페이지 및 플랫폼 체험페이지, 홍보영상 및 홍보물, 포장디자인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li> <li>○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기타 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li> </ul>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O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전비	○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시험·인증비	○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시회참가비	○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등 소요비용
멘토링비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 하는 비용
회계감사비	<ul><li>○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이 지정한 회계 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li></ul>

### □ 기타 지원

○ 네트워크 지원: 금융 빅데이터 분야 기술동향과 정부정책 등을 주제로 워크숍, 성과교류회, 간담회 등

#### O 창업공간 지원

- 지원대상: 2025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선정기업 중 예비창업자 및 도내 이전 예정기업 창업자 등

- 지원장소: 미래기술혁신센터 보육실(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린대로)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2. 31(\*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센터규모: 3층(지상), 연면적 1.600㎡

- 시설 세부내용

구분	개소
인큐베이팅실	4EA (11~22평/EA)
행정실	1EA (11평/EA)
세미나실	1EA (16평/EA)
창업교육실	2EA (22평/EA)

# Ⅳ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5. 2. 26.(수) ~ 3. 17.(월) 15:00까지
-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
  - 온라인신청플랫폼(http://event.jbci.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 사업지원 신청: 공고문,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제출)
  - 신청서 수정 및 확인
    - 신청서 수정 및 접수 확인은 공고 마감시간까지 가능
    -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시 설정한 비밀번호(숫자4~8자리) 입력 후 본인 신청내용 확인 가능
    - ※ 주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접수 건에 대해 미접수 처리 예정이며, 접수 마감일 업로드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O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 사실증명(홈택스 발급가능) (**필수**)
  - 기창업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폐업증명원(폐업사실이 있을 경우)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문)세무서 또는 (인터넷)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문)주민센터, (인터넷)정부24 또는 위텍스에서 발급 가능
  - \* **사실증명원 발급**: 국세청(홈텍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기창업자: 총사업자등록내역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실적(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증빙서류 (**필수**)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수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해외특허등록서, 국제인증서, 국제협약서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수료증 (해당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 기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에 한함
- O 금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상장 스캔본 (해당자)
- 기타 제출서류(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 등) (해당자)
- □ 문 의 처: 특화사업본부 오픈이노베이션팀 (063-220-8991, 8993)

## 신청절차

#### □ 선정평가

평가단계		평가설명		
1단계	서면평가	・전문가(금융 또는 IT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선정		
2단계	발표평가	・전문가(금융 또는 IT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평가		
3단계	최종선정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공고일 기준)

· 2순위: 데이터 연계성(평가항목 내) 고득점 기업

####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 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O 서면평가

- 평가항목: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 성장 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대표자 역량 등
- 최종 선정 기업의 1.5배수 내외 선발

구 분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계획적정성	- 사업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목표달성 가능성			
	기술성	- 유사기술과의 차별성(독창성), 기술의 난이도, 기술의 파급효과(실현 가능성)			
서류평가	사업성	- 해당기술 시장전망(성장가능성),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역량	- 사업추진 능력, 기업 보유 역량 등			
	데이터 연계성	- 아이템과 <u>금융 데이터</u> 의 연계성, 활용성, 적절성 등			
가점		-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 O 발표평가

- 평가항목: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

구 분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창업의지	- 창업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사전준비성		
	전문성	- 전문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및 창업자 전문성, 성과 창출 계획 등		
발표 평가	기술성	- 유사기술과의 차별성(독창성), 기술의 난이도, 기술의 파급 효과(실현 가능성)		
0/1	사업성	- 제품(서비스) 구현계획, 실현가능성, 차별성 등		
	가능성	-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 기술 파급효과, 투자 유치, 고용 등		
	데이터 연계성	- 아이템과 <u>금융 데이터</u> 의 연계성, 활용성, 적절성 등		

○ 최종선정: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사업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금 최종 확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검토
2025. 2. 26.(수) ~ 3. 17.(월) 15시	$\Rightarrow$	2025. 2. 26.(수) ~ 3. 17.(월) 15시	$\Rightarrow$	2025 2 10 (南) 2 10 (人)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플랫폼		2025. 3. 18.(화) ~ 3. 19.(수)
				Ţ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합격자 발표		1차 서면평가
2025. 3. 27.(목)	<b>\( \( \)</b>	2025. 3. 21.(금)	<b>\( \( \)</b>	2025. 3. 20.(목)
평가위원회		E-mail		평가위원회
Ţ				
최종 선정기업 발표		협약 및 입주계약 체결		사업수행
2025. 3. 28.(금)	$\Rightarrow$	2025. 4. 3.(목)(예정)	$\Rightarrow$	2025. 4. 3.(목)~ 12. 31.(수)
E-mail		전북창조↔선정기업		전북창조↔선정기업
	•		•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이 선발기업의 1.5배수 미만일 경우 연장공고 진행으로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Ⅵ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 를 취할 수 있음

###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및 시제품제작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sup>\*</sup>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붙임 2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구분		상세 -	창업여부	
	타인으로부터		동종유지	창업아님
	상속/증여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평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창 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	창업아님 창 업 창 업	
		이종창업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법인기업		이종창업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1174	0001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ᇫᄭᄖᄸ	동종유지		창업아님
	조직변경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